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개정 2013.12.12>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경력 등의 상당계급표(제15조 관련)

상당계급 구분		5급 연구관 지도관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지도사			
일반직		5급 연구관 지도관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임기제 공무원	일반	5급	6급	7급	8급	9급
	시간제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한시	5호	6호	7호	8호	9호
경찰공무원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령 지방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방장 지방소방장	소방교 지방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사
군인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군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국가정보원 직원		5급	6급 기능직 기능6급 이상	7급 기능직 기능7급	8급 기능직 기능8급	9급 기능직 기능9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고: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의 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연구사 및 지도사의 바로
아래 계급 상당계급은 8급 및 9급을 말한다.